

유치원교원 인사 자문위원회 규정

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인사 자문위원회’로 칭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함)

제2조(목적)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 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 나. 부장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 다.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업무분장 조직에 관한 사항
- 마.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전보, 승진)

제4조(조직)

- ① 위원회는 원감과 보직교사 1명, 학급담임 교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감으로 한다.
- ②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급담임교사 1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원감)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 ④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교무기획부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가.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 ②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되 이의가 있을 시 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인사규칙의 재.개정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협의.결정한 후 원장이 공포한다.

제6조(학급담임 배정)

- ① 학급담임은 교사가 제출한 희망서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학급담임 배정 시 경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가. 보직교사가 보직을 포기한 경우

나. 유치원 행정의 특수성에 따라 교무(연구시범유치원 지정 시) 부장의 경우

다. 전년도에 방과후 과정반을 담당한 교사

라. 지정유치원 지정 수업을 한 교사, 위원회에서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교사

마. 원로교사(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만55세 이상)는 본유치원 1년 이상 재직 시 우대

③ 학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본원 근무 다경력 순

나.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순

제7조 (보직교사 임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한 규정 및 경기도공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① 보직교사의 종류 : 교무기획부장

② 부장교사 임용 시 예정 직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가. 유1정 소지 자격자

나.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공로로 표창을 받은 자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각종 경기 및 전시회, 연구발표 대회에서 입상 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업무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보직교사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②항의 우선 임용대상자.

나. 유1정 소지 자격자 중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다.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순

라. 위 조항이 동일한 조건의 경우 3배수를 선정 원장이 순위를 결정 한다.

④ 부장교사의 해면은 본인의 원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부장교사 해면을 할 수 있다.

가. 학급의 감축으로 정족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휴직 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교원의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라. 근무태도(복무실태)가 불량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방과후반 담당교사 배정)

①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는 본인 희망에 의한다.

② 방과후 과정반 담당 배정 시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가. 보직교사가 보직을 포기 한 경우

나. 본원 다 경력 교사

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배정 할 수 있다.

③ 방과후 과정반 담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전입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④ 전입교사가 발생하지 않고, 방과후 과정반 담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서 방과후 과정 경력이 없는 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 ⑤ 재직교사 모두가 방과후 과정반을 담당하였고, 방과후 과정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사 3인이 순위를 작성하여 윤번제로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분장)

- ① 본인의 희망을 참조하여 과거의 업무 실적과 당해 업무 수행능력과 본인의 취미, 특기를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무를 배정한다.
- ② 부장교사는 유치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표창)

- ① 표창대상자 추천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되 해당 부분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된 교사를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원장에게 복수 추천을 하고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가.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가 여부
 - 나.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
 - 다. 포상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
 - 라.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 여부
 - 마. 유사한 내용의 타 공적자와 균형
 - 바.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 사.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
 - 아. 표창이 조국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 자. 기타사항(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 가. 본원 장기 근무자 우선
 - 나. 경합 시 고 경력자 우선
 - 다. 본원에서 동일 등급의 수상경력자는 차 순위로 한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할 수 없다.
 - 가.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학급감축으로 인한 전보내신)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전보내신이 발생할 때 다음 각 호 순에 의하여 전보내신 한다.

- ① 희망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 (단 희망자가 감축 학급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 순에 의하여 내신한다)
 - 가. 본원 장기 근무 교사
 - 나. 본원 근무경력 동일 시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 ② 희망자가 없을 때는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하여 내신한다.
 - 본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 가. 본원 경력이 적은 교사 순
 - 나. 총 경력이 낮은 교사 (동일한 조건인 경우 생년월일이 낮은 교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